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3호 2020. 5. 15.(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01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02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하동군 조례 제2403호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하동군 조례 제2404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405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406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하동군 조례 제2407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
○ 하동군 조례 제2408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23
○ 하동군 조례 제2409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27
○ 하동군 조례 제2410호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37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19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2
○ 하동군 규칙 제1220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8
○ 하동군 규칙 제1221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6
○ 하동군 규칙 제1222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65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60호 하동군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67
○ 하동군 훈령 제361호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77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고 시

○ 하동군 하동읍 고시 제2020-4호 2020년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 공고 83
○ 하동군 고시 제2020-81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김영*)· · · · · · · · · · · · · · · · · · · 88
○ 하동군 고시 제2020-82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노인*)· · · · · · · · · · · · · · · · · · · 89
○ 하동군 고시 제2020-8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김휘*)· 90
○ 하동군 고시 제2020-8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치2)· · · 91

공 고

○ 하동군 북천면 공고 제2020-11호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보조인력 모집 재공고 94
○ 하동군 공고 제2020-641호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공고· · 98
○ 하동군 공고 제2020-660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102
○ 하동군 공고 제2020-690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국도59호선 하동옥종-산청시천 미포장도로정비공사, 20수용0465)· · · · · · · · · · · · · · · · · · 103
○ 하동군 공고 제2020-691호 2020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 · · · · · · · · · · · 105
○ 하동군 북천면 공고 제2020-13호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보조인력 모집 재공고(3차) 117
○ 하동군 공고 제2020-693호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 · · · · · · · 121
○ 하동군 공고 제2020-698호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124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1 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2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생 략) ②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7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10억원----------.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3 호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주사”를 “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복지업무담당주사----------.
제14조(사용 허가 취소 등) ① (생략) ② 사용 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 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니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4 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

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

	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7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5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감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 활동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별표 6 및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관련)

품 명	규 격	처리비	품 명	규 격	처리비
냉장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8,000원 6,000원 4,000원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원 5,000원
텔레비젼	43인치 이상 12인치 이상	5,000원 3,000원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원 4,000원
세탁기	모든규격	4,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4인용 미만	5,000원 4,000원
에어콘	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	8,000원 5,000원 3,000원	서 랍 장 신 발 장 책 장	모든규격 모든규격 모든규격	3,000원 3,000원 3,000원
가스오븐 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원 2,000원	침 대	2 인 용 1 인 용	8,000원 6,000원
탈수기	모든규격	2,000원	피 아 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원 15,000원
폐소화기	모든규격	3,000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원			
장농	120㎝당 1쪽 90㎝당 1쪽	15,000원 10,000원	건설폐기물	톤 당	22,500원
			생활폐기물	4.5㎡(청소차 론온박스1대)	69,200원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며 그 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밀도를(0.45TON/㎥)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

[별표 7]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1항 관련)

용 량	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		
	공 급 액	판 매 이 익	봉투 판매 가격
5ℓ	91원	9원	100원
10ℓ	182원	18원	200원
20ℓ	364원	36원	400원
50ℓ	819원	81원	900원
75ℓ	1,229원	121원	1,350원
P・P포대	2,093원	207원	2,3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감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 활동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6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5조(설치기준) ①----------. 1. ~ 5. (현행과 같음)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삭 제>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7 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종합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2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 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⑥·⑦ (생 략)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획행정국장----------. ⑥·⑦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8 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5.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주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생 략) <신 설>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5.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

	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주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삭 제>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09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가목 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최초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각각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같은 호 중 “0.8배”를 “0.6”로, “1배”를 “0.7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5항 단서규정에”를 “제5항에”로 한다.

별표 3과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5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복합용도일 경우 강화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 1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제31조 관련)

1.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1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1.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2.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4.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1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가. ------제15조----------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제20조의4(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최초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과 같다.	② 영 제86조제3항제2호 ----------.
1.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1. 영 제86조제3항제2호 ---------- 0.7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야 한다.	2. ---------- 0.6배---------- 0.7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생 략)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 바. (생 략)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4]	[별표 4]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1. ---60제곱미터----------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1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3회를 넘지 않는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는다.	2. ---60제곱미터----------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0 호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공익수당은 하동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2. 제2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어민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제6조(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4.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5.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6. 제5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4. 공익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등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장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

4.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산지 불법훼손 및 불법 어업행위 금지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수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이의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19 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 ①「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 시설 표지판 : 3천만원
2. 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
3. 운영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을 갖춘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공포일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공 사 명	
공사개요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 사 금 액	백만원
보 조 금 액	백만원, 군비 ( ) 자부담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 조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3. 장비표지판

보조금지원 장비구입

○ 보 조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장비는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습니다.

4.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보 조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크기 등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시설표지판**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공사·장비·운영표지판**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 설치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0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업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9호서식)
2.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10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백만원]

업체규모별 / 용도별	상시종업원수5인미만, 자본금1억원미만 또는 매출액5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5인이상, 자본금1억원이상 또는 매출액5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10인이상, 자본금2억원이상 또는 매출액10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자본금3억원이상 또는 매출액20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30인이상, 자본금5억원이상 또는 매출액50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100	200	300	500	700
기술개발자금	100	200	300	500	500
시설현대화자금	200	300	500	700	1,000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제5조제1호 관련)

· 업 체 명 :
· 본사소재지 : (전화)
· 공장소재지 : (전화)
· 입주공단명 :
· 대 표 자(남/여) : (생년월일)
· 융자신청액 : 일금 백만원정
· 업체현황

업 종 (주생산품)			자 금 거래은행	
연간매출액	내 수	수 출	공장규모	대지 평
	백만원	천불		건물 동 평
자 본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종 업 원	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명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사본 1통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개발계획서(제5조제2호 관련)

1.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 과 제 명 :

○ 개 요 :

2.기술개발의 필요성

3. 개발후의 기대효과

4. 기술개발계획

○ 공동(위탁)연구기관 :

○ 소 요 기 간 :

○ 연구개발 책임자(남/여) : 직위 성명 (인)

5. 자금계획

6. 기타 참고사항

업 체 명 :

대 표 자(남/여) : (인)

[별지 제5호서식]

시설자동화계획(제5조제2호 관련)

업 체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본 사	(전화번호 :)		
공 장	(전화번호 :)		
생 산 품		종 업 원 수	(남: , 여:)
생 산 품 목 의 용 도 와 특 징			

[별지 제9호서식]

일반운전자금 융자사업 완료서(제13조제1항 관련)

1. 업체현황

업 체 개 요	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주 생 산 품			
자금융자승인일			대 출 은 행	
대 출 금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자금 집행 내역

연번	품 명	규격(모델명)	수량	단 가	소요금액	구 입 처
	계					

붙임 : 세금계산서 사본, 인건비 지급대장 등 증빙서류

위와 같이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운전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남/여) : (서명 · 날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기술개발 ·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제13조제1항 관련)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FAX)	
융 자 승 인 일		융 자 금 액	

2. 시설설비 투자현황

❑ 건 축

건 축 의 종 류	신축 (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건축허가(신고)일		준 공 일	
시 공 업 체		건 축 기 간	
소 요 자 금	백만원	기 타	

❑ 기계 · 장비 · 설비 · 용역 · 연구개발비 등

연번	품명(용역명)	규격(모델명)	수량	단 가	소요금액	구 입 처

3. 융자(대출) 현황

대 출 은 행	대 출 금 액		
은행	계	건 축 자 금	기계 · 장비 · 설비 등
지점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 · 중 · 후 각 1부).
2. 시설투자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남/여) : (서명 · 날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1 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제11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지방세기본법」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하동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제12조 관련)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하동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하동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5-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하동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하동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5-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관인생략

■ [별지 제12호서식]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제13조 관련)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2. 한국거래소----------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3. 한국거래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표지판】

관리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담당부서	비고

※ 표지판 종류별(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원 (군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 관리자 현황

구 분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관 리 자				
담당부서				

□ 표지판 관리 점검결과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 제 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공사표지판	시설(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원 (군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	공 사 표 지 판 ( ) 시 설 표 지 판 ( ) 장 비 표 지 판 ( ) 운 영 표 지 판 ( )	공 사 표 지 판 ( ) 시 설 표 지 판 ( ) 장 비 표 지 판 ( ) 운 영 표 지 판 (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붙임 : 현장사진 1매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2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제5조 관련)

봉투판매소	상 호		지 정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구 분	공 급 내 역										수 납 내 역			
월일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공급액	수납액	잔액	확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하동군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60 호

하동군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제도”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면허”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4.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1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입자추”를 “지입차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관청은 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자격을 갖춘자에게”를 “관할관청은”으로, “면허 기본자격자”를 “관한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경우”를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양도, 양수”를 “양도ㆍ양수, 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7년간에 국내에서”를 “7년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우선하다”를 “우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급”을 “발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을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경력증명 발급은”을 “경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권한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을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권한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정경력증명”을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정하고”를 “인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교통사고중”을 “교통사고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운전지리에 익숙해야 하므로 면허신청공고일”을 “면허신청공고일(면허의 양수, 상속, 대리운전자의 경우 당해행위의 신청일을 포함한다)”로, “면허신청 공고일”을 “면허신청공고일”로, “1년 6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2”를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4”를 “시행규칙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26조”을 “시행규칙 제3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면허된 개인택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
<신 설>	3. "사업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

	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 설>	4.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면허의 기준) ①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양수받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는 규칙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면허의 기준) 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제1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차량의 지입자추와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지입차량으로 운전한 자	3 . ---------- 지입차주 ----------
제4조(면허의 기본자격 완화) 관할관청은 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자격을 갖춘자에게 하동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면허 기본자격자가 없거나 운전자 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조(면허의 기본자격 완화) 관할관청은 ---------- 관한 기본자격 요건을 갖춘 자----------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

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및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에 따라 ---------- 양도·양수, 상속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7년간에 국내에서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합산한다.	3. ---------- 7년간 ----------.
제5조(우선순위 적용) ① (생 략)	제5조(우선순위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표창은 운전경력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친절·수범택시상 수상자를 우선하다.	② ---------- 우선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전경력증명 발급) ①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전경력증명 발급) ① ----------. ---------- 않는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	1 . ----------

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은 소속조합에서 발급	----------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 등 기록이 보전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2 . ---------- 않은 ----------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한시택시의 경우 경력증명 발급은 소속조합에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합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권한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 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 <단서 신설>	3. -------- 경우, ----------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권한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② 운정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경력증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조(운전경력 산정 등) ① (생략)	제7조(운전경력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	② ----------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 기간중----------.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가 분리독립·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병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같은 회사 근속으로 이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 인정하고----------.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8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제8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해 교통사고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② ----------. ----------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의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	---------- 교통사고 중 ----------
제9조(거주조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하는 자는 운전지리에 익숙해야 하므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되어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6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동군 관내 운수사업에서 1년 6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9조(거주조건) ---------- 면허신청공고일(면허의 양수, 상속, 대리운전자의 경우 당해행위의 신청일을 포함한다) ---------- 면허신청공고일---------- 3개월 ---------- 3개월 ----------.
제10조(차고시설 확인 등)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2 기준에 따른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차고지확보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차고시설 확인 등) ① ----------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제①항에 따른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하동군	제10조의3(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동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감독) ① 사업자가 규칙 제15조4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동 규정이 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 시행규칙 제21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 구비서류 및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시행규칙 제35조----------.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5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61 호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제8조 관련)

하동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 종료 이후 : 감사결과 처분 지시 이전까지(별지 제2호서식)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한 것일 것
4.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현장면책 검토 요청 안내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2. 요청기간
   - 감사 종료일 10시 전까지(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제9조제4항 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인지 여부		
5. 기타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중

[별지 제2호의2서식]

현장 적극행정면책 검토 신청서(제10조의2 관련)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인지 여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 책임자 의견		

※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제10조 관련)

감 사 기 관 명		감 사 연 월 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인지 여부		
감 사 (부서) 책임자 검 토 의 견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인지 여부		
	종 합 의 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 2020 - 4호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쌀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하 동 읍 장

1 채 용 내 용

채용인원	근 무 지	담 당 업 무	근 무 기 간	비 고
1명	하동읍 산업경제부서	공익직접지불제 업무지원 (신청서접수 및 시스템 전산입력 등)	2020.05.18. ~ 2020.07. (예산소진시까지)	

2 응 시 자 격

○ 성 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역조건 : 하동군 관내에 주소(실거주)를 두고 있는자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전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엑셀, 각종 전산시스템 등) 소지자 및 유경험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채 용 방 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 채용인원보다 합격 인원이 많을 시 실시)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05. 01.(금) ~ 05. 11.(월)
○ 접 수 처 : 하동읍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접수기간 종료일 근무시간(18:00) 도착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심사발표 : 2020. 05. 11(월) - 개별통지
○ 2차 심 사 : 2020. 05. 12(화)
○ 최 종 발 표 : 2020. 05. 13(수) - 개별통지

6 임금 및 근로조건

○ 보 수 : 일급 68,720원
※ 4대 보험가입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근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이력서 1부씩(붙임양식)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및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읍 산업경제부서(☏055-880-6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동읍장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 번 호							~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 번 호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 응시원서 』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마. 생년월일 :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20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아.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 력 서

구분	응시 분야	
내용	공익직불제 보조업무	

성 명	(한문)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주 소			
전화번호		E-MAIL	
핸 드 폰		결혼유무	미혼 / 기혼
가족사항	남 녀 중	주거사항	동거 / 비 동거

학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소재지
					졸업 / 재학	
					졸업 / 재학 / 휴학	
					졸업 / 재학 / 휴학	

경력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 . ~ .				
	. . ~ .				
	. . ~ .				

신체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cm	kg	좌:	형
			우:	

병역	구분	병과	계급	소속부대
	필 / 면제			
	복무기간	년 월 ~ 년 월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근무처	직위	동거

외국어	언 어	능 력
	영 어	상 중 하
	공인시험	점 수

OA능력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자격사항	취득일자	종 류	등급
	. .		
	. .		
	. .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20-8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김영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851번지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2.00㎡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4월 28일까지	
점용 · 사 용 의 유 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4월 29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20-8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노인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578번지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22.00㎡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년 05월 04일부터 2025년 05월 03일까지	
점용 · 사 용 의 유 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동군 고시 제2020 - 83호

하천점용 허가증

주 소			
성명(법인명)	김 휘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	신기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화개면 부춘리 1165(천) / 인접 : 화개면 부춘리 175(답)		
점용면적	48㎡		
최초허가일	–		
점용기간	2020년 4월 17일부터 ~ 2025년 4월 16일까지(5년간)		
허가조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4 월 17 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8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지정현황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대치2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70-21번지 일원	침수위험 해일위험 지구	다	390,000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수(남해)의 영향으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에 따른 농경지, 양식장, 원예작물 수출단지 등의 침수피해 발생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별첨)

2020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 대치2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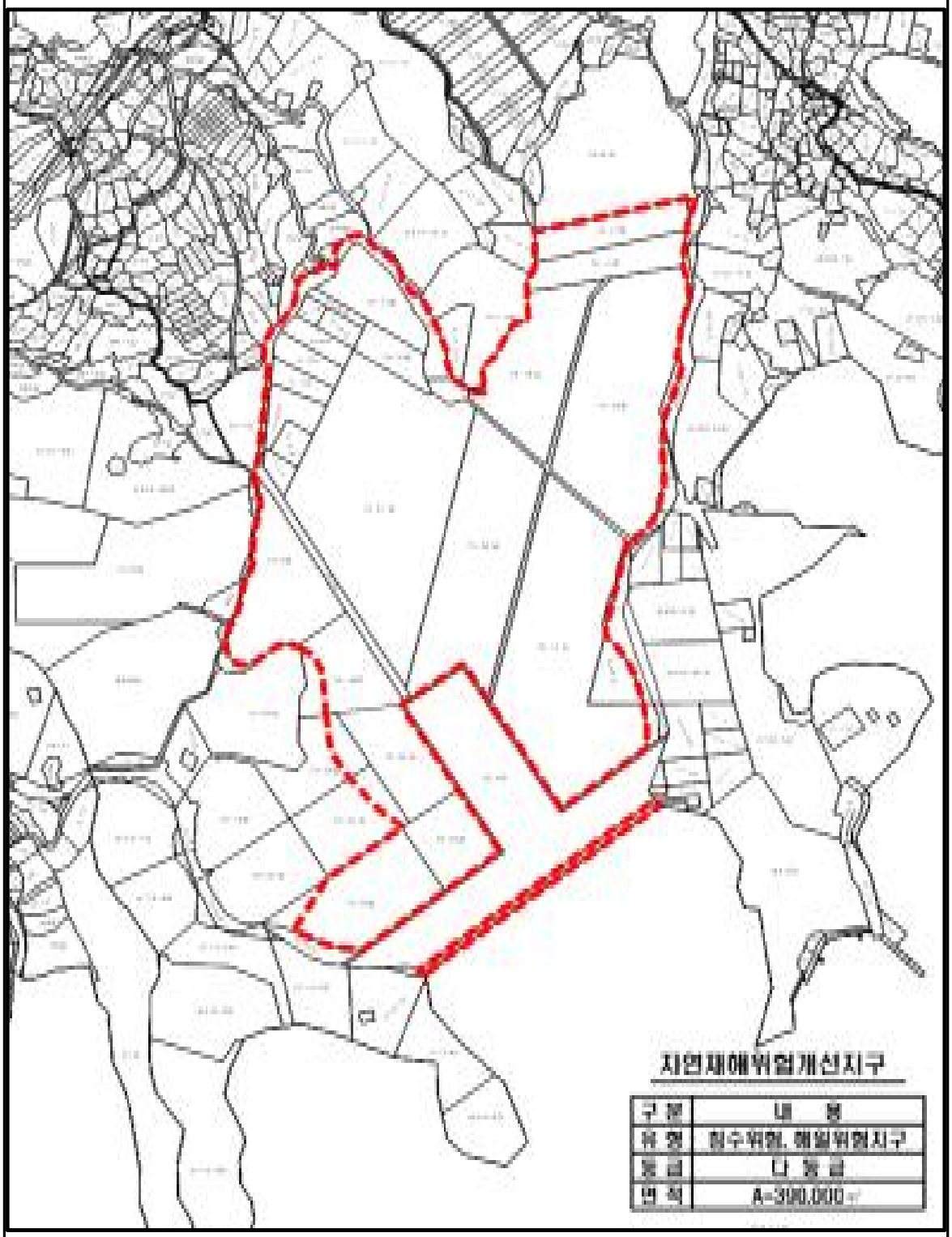

□ 현황사진

하동군 북천면 공고 제2020-11호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보조인력 모집 재공고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북 천 면 장

1. **모집인원** : 1명

※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0. 4. 29.(수) ~ 5. 6.(수) (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5. **접수장소** : 북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6. **작업형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 업무보조

7.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북천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8. 응시자격의 제한

가.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1. **합격자 발표 :** 2020. 5. 8.(금)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5. 11. ~ 예산소진시까지

1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18:0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다. 임　　금 : 68,720원/1일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마. 1개월간 계속 참여 시 월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 업무보조

15.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북천면 산업경제담당(055-880-6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보조인력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 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 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력사항	① ② ③
기타사항 기술 (본인)	차량 소유여부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하동군 공고 제2020 - 641호

공 고

수산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1) 승인내역

어업별	유형별	승인신청		검 토 결 과					
				승 인		불승인		조정(축소)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계		1	1.7	1	1.7	-	-	-	-
마을어업	신규개발	1	1.7	1	1.7	-	-	-	-
	재 개 발	-	-	-	-	-	-	-	-
	대체개발	-	-	-	-	-	-	-	-

2) 승인조건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 협의된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견·발생되는 경우 그 민원 및 어업 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신규·재·대체개발시 기존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망 및 폐어구 수거 등 어장청소완료를 확인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신규·재·대체개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어장은 재해대책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어장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사.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자. 정치망어업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의거 기존어장 구역범위,

어구설치형태, 보호구역은 기존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차. 위(가~자)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하여는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어업면허를 처분함

2. 열람기간 : 2020년 5월 4일 ~ 2020년 6월 2일 (30일간)

3. 장 소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어업생산담당)

4. 어업면허 우선순위신청

가. 자 격 :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단,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 여권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055-88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 끝.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 마을어업 】

○ 신규개발

시·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신청 도면
하동군	마을어업	마을어업	굴 등	금남 노량	1.7	승 인	1

하동군 공고 제2020 - 660호

공 고(안)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 류	양식방법	품종	어 장 위 치	면 적 (ha)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 고
하동양식 제49호	패 류 양식어업	바닥식	새꼬막	진교면 술상리 지 선	13	2020.05.04	2020.05.06 2030.05.05	술 상 어촌계장	하동양식 제10호 재개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하동군 공고 제2020 - 69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경상남도로부터 국도59호선 하동옥종-산청시천 미포장도로정비공사(20수용0465)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5. 11.

하 동 군 수

□ 사 업 명 : 국도59호선 하동옥종-산청시천 미포장도로정비공사(20수용0465)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열람기간 : 2020.5.11. ~ 2020.5.29.(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하동군 건설교통과(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별관 2층), ☎ 055-880-2504

□ 의견제출기간 : 2020.5.11. ~ 2020.5.2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62-6번지(임야) 1,301㎡
- 토지소유자 : 개별통보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목록(토 지)

'별지 제1목록]국도59호선 옥종원태~산청시천간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수용토지의표시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지목 실제	면적(㎡)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소
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원태리	산62-6	임	임	1301㎡	1,650 2,146,650	위성량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길 80 204동 807호 (등)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317-2	국(순천세무서) 압류	
1	"	"	"	"	"		"	"	동양시멘트주식회사 가압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1	"	"	"	"	"		"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순천지점) 가압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1	"	"	"	"	"		"	"	순천시 압류	
1	"	"	"	"	"		"	"	장철수 근저당권자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주택3길 17 (등)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222-19
1	"	"	"	"	"		"	"	주식회사광양상호신용금고 가압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1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사) 가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1필지			1,301.000	2,146,650	1인		7인	

하동군 공고 제2020 - 691호

2020년도 하동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공고

하동군에서는 2020년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5. 11.

하 동 군 수

❑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0. 5. 13.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4대, 100,000천원

- 우선순위 물량배정

계	일반	※우선순위 (20%)	비고
4대	3대	1대	3분기까지 미집행 물량 4분기 통합 집행

※ 보조금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만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만18세이상 연령무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전까지 경유차 말소·폐차 이행)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

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붙임 1참조)

❑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기준 : (개인)세대당 1대, (법인·기업체)법인 당 1대

○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단가 : 최대 2,500만원

- 전기화물차 :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 붙임 1 참고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① 2019. 12. 31일 이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② 하동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가 하동군에 있어야 함.

③ 하동군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자동차 제작 · 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내 2대 이상 동일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전기자동차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차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전기화물차 보급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 5. 13.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붙임 2]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 지원확정자 선정방법

- 차량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자 선정

※ 출고·등록순이므로 예산소진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신청 취소처리 됨

○ 보조금 집행

- 차량 제조·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붙임 3] :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

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차량 제조·판매사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차량 제조·판매사→하동군(시스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하동군(시스템)→차량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차량 제조·판매사→하동군(시스템)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하동군(시스템)→차량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차량 제조·판매사→구매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차량 제조·판매사→하동군(시스템)
↓	
보조금 지급	하동군→차량 제조·판매사

○ 특이사항

①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②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충전기 설치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지원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화물차 보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차 제조·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전기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다만 하동군 승인 시 변경 가능)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 임**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하동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조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름

❑ 전기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경상남도내 전기차 보급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055-211-6664
하 동 군 (환경보호과)	하동군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055-880-2564

붙임 1. [붙임1] 2020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지원단가 1부.
2. [붙임2]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1부.
3. [붙임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1 2020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 화물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862	512	150	2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862	512	150	2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862	512	150	20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862	512	150	2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800	1,100	300	4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2,500	1,800	300	4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2,500	1,800	300	400
	현대자동차	포터II 일렉트릭	2,500	1,800	300	400
	기아자동차	봉고III 전기차	2,500	1,800	300	4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붙임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보조금 우선순위 해당여부		○, ×로 표기 ○ : 보조금 우선순위신청서 작성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19.12.31일 이전부터 하동군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부.
4.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2-1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붙임 2-2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

※ *해당자 작성*

□ 신청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만39세미만	그 외

- 해당부분 : ○ 표기
- 증빙서류 : 관련 증명서 사본[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제외(우리군 확인)]

□ 신청자 소유 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차 구매

① 말소·폐차 이행			② 말소·폐차 예정	
소유자	차량번호	말소일시	소유자	차량번호

- 증빙서류 :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② 말소·폐차예정의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시 제출)

① 말소·폐차이행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경유차를 말소·폐차한 경우 기재

② 말소·폐차예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신청 전까지 신청인 소유 경유차를 말소·폐차할 경우 기재

※ 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제출

-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붙임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제작사		차대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명 (연식,트림)		차량번호		차량등록일	
보조금 신청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3-1

※ 구매자, 제조사(대리점) 각각 작성

하동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서약자 : 성 명 (서명)

하동군 북천면 공고 제2020-13호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보조인력 모집 재공고(3차)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3차)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북 천 면 장

1. 모집인원 : 1명

※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0. 5. 12.(화) ~ 5. 14.(목) (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접수장소 : 북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6. 작업형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 업무보조

7.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북천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8. 응시자격의 제한

가.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1. **합격자 발표 :** 2020. 5. 15.(금)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5. 18. ~ 예산소진시까지

1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18:0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다. 임　　금 : 68,720원/1일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마. 1개월간 계속 참여 시 월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 업무보조

15.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북천면 산업경제담당(055-880-6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보조인력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면허	1. 2. 3.		교육이수	교 육 명		교육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력사항	① ② ③
기타사항기술(본인)	차량 소유여부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하동군 공고 제2020 - 693호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명예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2.

하 동 군 수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0. 5. 12(화) ~ 2020. 5. 27(수)

2. 명예도로명 부여(안)

명예도로명	도로구간		사용기간	비고(부여사유)
정동원길	시작지점	끝 지점	5년	우리군의 지역문화 홍보 및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진교면 백련리 1-5번지 (진교면 백련마을 앞)	금남면 덕천리 820번지 (금남면 하삼천 로타리)		

3. 의견제출

명예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관,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및 제출방법

○ 방문 :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055-880-2123)

○ 팩스 :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민원과(055-880-2078)

○ 우편 :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민원과

라. 제출서류 : 명예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055-880-2122~4)로 문의 바랍니다.

명예도로명 부여(안) 주민의견서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주민의견 사항

명예도로명 의견	사 유

위와 같이 명예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명예도로명 부여(안) 위치도

▢ 구간위치

▢ 명예도로 현장 사진(시점↔종점)

시점 : 진교면 백련리 1-5번지 (진교면 백련마을 앞)	종점 : 금남면 덕천리 820번지 (금남면 하삼천 로타리)

하동군 공고 제2020-698호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2.

하 동 군 수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 38백만원, 약 11대(변동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동시에 접수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량연식(제작일자 기준)이 최신 차량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 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사업절차 및 방식

신청자와 장치제작사 협의 후 사업신청	→	부착대상 확인 및 승인	→	장치부착 및 구조변경 검사	→
소유자→제작사		장치 제작사		제작사→교통안전공단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
하동군		제작사→하동군		하동군	

❍ 신청방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이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서 하동군으로 사업신청

→ 장치부착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사업참여 신청서 1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저감장치 제작 지연 등의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장치제작사) 각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협회작성) 1부
- 청렴이행서약서 (신청자 및 제작사) 각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작사 법인인감증명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매연 저감장치 및 교체 엔진을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제외 대상임

❑ 기타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담당(☏055-880-2564)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장치명
1	㈜크린어스	1577-9014	1종 DPF
2	㈜세라컴	02-744-1777	1종 DPF
3	㈜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1종 DPF
4	일진복합소재㈜	1588-7558 031-220-0883	1종 DPF
5	HK-MnS㈜	070-4267-2727	1종 DPF
6	㈜에코닉스 (쌍용차)	02-2666-3480~1	1종 DPF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신청서
2.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5. 위임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청렴이행서약서

[붙임1]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정보	차명		차량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배기량	cc	총중량	kg
	최초등록일		연식(제작연도)	

2020년 하동군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 1부

하동군수 귀하

[붙임2]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2020년 하동군 노후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차량 총중량	kg	연 식		저속운행 여부 유□, 무□
원동기 형식		장치종류		보조금 만원
장 치 명		장치효율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으로 부착 후 (3년 이상)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원본은 하동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붙임3]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미만 구분)	RV, 승합, 화물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 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붙임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 /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2020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동시저감은 일체형,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붙임5]

위 임 장

건설기계의 표시	등 록 번 호 :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종류 :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인천광역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건설기계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엔진교체사업자) ㊞ 주소 : 엔진교체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인천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건설기계 관리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인천광역시장 등),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중

[붙임7]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성 명 (서명)

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노후된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2.

하 동 군 수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3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115.5백만원, 7대

❍ **대상자 선정** :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하동군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건설기계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부착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승인 신청 시 신청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자와 장치제작사 협의 후 사업신청	→	교체 대상 확인 및 승인	→	엔진교체 및 구조변경 검사	→
제작사→하동군		하동군→제작사		제작사→교통안전공단	
적정장치 부착여부확인 (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교체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
하동군		제작사→하동군		하동군→제작사	

❍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장치제 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하동군으로 제출**
  → 엔진교체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교체가능여부 확인을 한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엔진 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

❍ 신청서류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1]
-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1부[붙임2]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청구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동군청 별관 1층 환경보호과)

❍ **청구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붙임3]
-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1부[붙임4]
- 건설기계 엔진 배출가스 인증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구조변경내역 필) 1부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6]
- 제작사·신청자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붙임7]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1부
- 제작사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매연 저감장치 및 교체 엔진을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문의

❑ 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2564)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 이알인터내셔널(주) (☎ 031-940-2580) - ㈜크린어스 (☎ 031-627-2900) - ㈜엑시언 (☎ 031-270-6381) - ㈜HK-Mns (☎ 070-4267-2729) - ㈜이엔드디 (☎ 070-4027-3487) - ㈜세라컴 (☎ 1644-5232)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
2.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3. 보조금 지급청구서
4.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5. 위임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청렴이행서약서

[붙임1]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건설기계	건설기계 명	굴삭기 ( ) 지게차 ( )	등록번호	
	형식(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작업 내용 (용도)	옥내에서/옥외에서 물건 운반 기타 등등	사 업 자	

2020년 하동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3.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 1부

하동군수 귀하

[붙임2]

건설기계 엔진 교체 계약서

2020년 하동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건설기계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건설기계명		소유자		형식(모델)	
등록번호		연 식		엔진 형식	
규 격		차대일련번호		차량 총중량	
엔진교체사업자		교체엔진 형식		보조금	만원

□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 교체사업자에 위임)합니다.

○ 탈거된 (구형엔진) 및 (주변장치)는 (하동군)에 반납하여야 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구조변경일로 부터 (3년간)의무사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폐차) 또는 (수출, 말소)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반납)을 하여야 함.

○ 엔진 교체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교체일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1년 또는 2,000hr) 중 먼저 도래한 기간, 그 외 부품은 (6개월 또는 1,000hr)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이며, 엔진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엔진 교체는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계약서 원본은 하동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엔진 교체 사업자〉	〈건설기계 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붙임3]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신 청 자 (적격업체)	사업자명	
	대 표 자	
	주 소	(연락처 :)

지급신청 내 용	종 류	합 계	지게차			굴삭기	
			2톤	4톤	6톤	5톤	14톤
	사 업 량(대)						
	사 업 비(원)						

엔 진 교 체 결 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건 설 기 계 현 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건설 기계명	형식 (모델)	규격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주행 시간	장치 종류	장치형식 (제작사)	
	계								hr			
									hr			
									hr			

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엔진교체사업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구조변경내역 필) 1부
3.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4. 건설기계 엔진 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5.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제작사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붙임4]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장비 현황

소 유 자		건설기계명		형식	
등록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규 격		차대일련번호		주행시간	hr

□ 엔진교체 현황

엔진형식		규 격		제품(일련) 번호	
엔진교체 사업자		장착장		교 체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 **엔진교체 후 폐차 또는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할 경우 보조금 반납의무 있음**

- 교체일~3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탈거된 구형엔진 및 주변장치는 하동군에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사업자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 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사본

2020년 월 일

작성자(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엔진교체사업자)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붙임5]

위 임 장

건설기계의 표시	등 록 번 호 :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종류 :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중

[붙임7]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성 명 (서명)